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478호

「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
고시합니다.

2022년 8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의2”를 “「자동차관리법
시행규칙」 제56조의2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55조의2제2항”을 “제56조의2제2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제외하여야 하며”를 “제외할 수 있으며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튜닝부품인증의 유효기간 등)”을 “(튜닝부품인증서의 재
발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
부분으로 한다.

제12조제5호 중 “득한”을 “받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자동차 관리법」 제34조의2, 「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의2 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」 제56조의2--- ----- ----- -----.		
제3조 (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(이하 “규칙“이라 한다) 제55조 의2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기관(이하 “인증기관“이라 한 다)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.		제3조 (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제56조 의2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		
② ~ ④ (생 략)	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시험기관의 운영) ① (생 략)		제4조(시험기관의 운영) ① (현행 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 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,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 한다.		② ----- ----- ----- 제외할 수 있 으며----- ----- -----.		
제9조(튜닝부품인증의 유효기간 등) ① 인증된 튜닝부품의 유효		제9조(튜닝부품인증서의 재발급) <삭 제>		

<u>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,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회에서 튜닝부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	
② (생략) 제12조(인증취소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5. 인증을 <u>득한</u>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·변조 및 중복사용,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	(현행 제2항과 같음) 제12조(인증취소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----- 받은 ----- ----- ----- -----